

의안번호	2202815
의 퇴 인	김영환 의원
회 답 일	2024. 8. 26.
추 계 번호	24F28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42조의2제1항(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감면 항목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
2	안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2조의2제1항(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1) 모든 조세감면 항목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명시(안 제142조의2제1항)

□ 개정안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에 전체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조세감면”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으로 변경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하도록 함

□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인력·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국가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화(안 제142조의3)

□ 개정안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할 경우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예상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가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총 136종¹⁾)의 제작 인쇄비 세부내역을 토대로 추계한 부속서류 1종당 인쇄비는 약 2,3백만원임
 - 2024년 기준, 국가결산보고서 136종에 대한 인쇄비 예산은 총 313,155,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종당 인쇄비는 2,302,614원임
- 개정안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을 의무화하여 이를 결산서류로 제출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3백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1백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2025년부터

1)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5종이며 종별 권수를 적용하면 총 136권임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4, p.388.)

2024회계연도 조세지출 결산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제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안 제142조의3)	2.3	2.3	2.3	2.3	2.3	11.5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연평균 230만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